

계절학기 운영규정

□ 제정 : 1998. 05. 21
□ 개정 : 2007. 09. 07
□ 개정 : 2017. 05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8조에 의하여 방학기간중에 개설하는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설) 계절학기는 여름학기만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겨울방학에도 개설할 수 있다.

제3조(개설교과목) 개설 과목은 교양과목 및 단과대학에서 개설을 희망하는 교과목으로 한다.

제4조(수강자격)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자는 본 대학교 제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졸업 학점 미 취득자 및 성적갱신을 희망하는자 또는 개설된 과목의 수강희망자로 한다.

제5조(개설공고) 총장은 계절학기의 개설기간, 개설교과목, 수강신청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) ① 계절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교무입학처에서 수강신청서를 교부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신청학점은 시간표상 교과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로 한다.

제7조(수강료 및 수당)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산정하되 당해 학기 20등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정한다.

② 계절학기 강의담당 교수 및 관련 직원에게는 수강료 범위내에서 강사료, 관리수당 등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총장이 당해 학기마다 정한다.

제8조(수업시간수) 계절학기의 수업 시간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9조(개설교과목 취소) ① 계절학기의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가 15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개설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강료를 반환한다.

제10조(성적처리)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등급을 표시하고 출석, 평소 및 시험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다.

제11조(성적평가) 계절학기 성적은 정규학기의 평점평균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졸업시 전체성적 평점평균에만 합산시킨다. (탈락, 유급, 학사경고, 학사경고해제, 장학생선발 등에는 무관하다)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